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목 차 】

I . 개관	1
1. 조직 및 인력운용현황	1
2. 예산안 개요	4
가. 예산규모	4
나.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액	4
3. 세출예산액 명세	6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7
가. 공수처 예산 연혁	7
나.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11
다. 예산구조 분석	13
II . 검토의견	15
◆ 총괄적 검토 ◆	15
1. 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	15
가. 공수처 대표 성과지표	15
나. 성과지표 기관의 임무와 연계성 및 객관적 측정방식 제고 필요	17
2. 공수처 인력운용 문제 개선 필요	20
가. 공수처 인력운용 현황	20
나. 파견인력 과도로 인한 독립성·전문성 저해 우려	22

◆ 개별사업별 검토 ◆	27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27
가. 예산안 개요	27
나. 내부고발자 제도 실질화 노력 필요	28
4. 공판활동지원(1033-301)	33
가. 예산안 개요	33
나. 검사 스피치 교육비용의 필요성 검토 필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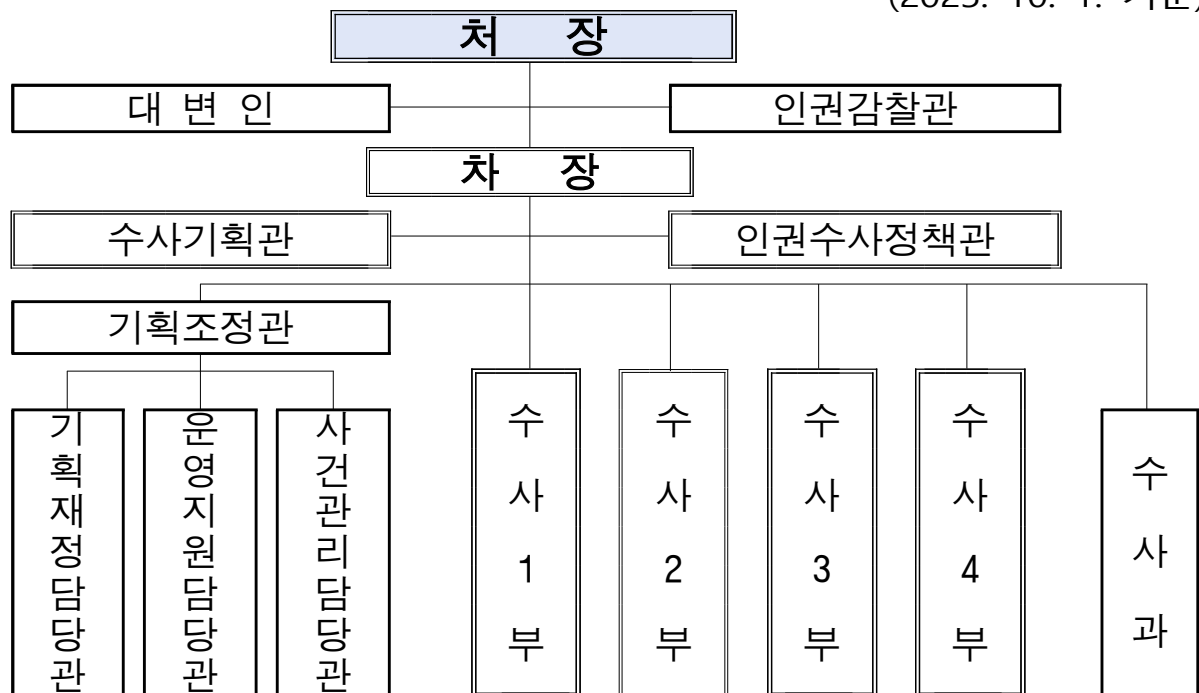
I. 개관

1. 조직 및 인력운용현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및 부정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판·검사 등 일부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소제기 및 유지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5년 10월 1일 기준 4관 4부 5과로 구성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도〉

(2025. 10. 1. 기준)



자료: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14. 제정, 2020.7.15. 시행, 이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검사(제4조 및 제8조제2항)¹⁾, 40명 이내의 수사처수사관(제10조제2항)²⁾ 및 20명 이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제11조)³⁾ 등 총 8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는데, 2025년 10월 15일 기준 현원은 총 78명임.

〈공수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25	40	20	85
현원	21	38	19	78

자료: 공수처

-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수처 예규)」에 따라 사무보조직, 운전직, 방호직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근로자⁴⁾를 두고 있음. 공무원근로자의 정원은 조직

- 1) 「공수처법」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 2)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3)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원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데⁵⁾, 2025년 10월 기준으로 공수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38명 중 37명을 채용하고 있음.

〈공수처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사무보조직	운전직	방호직	계
정원	26	3	9	38
현원	26	3	8	37

자료: 공수처

- 한편, 「공수처법」에서는 정원 내에 포함되는 검찰청 검찰수사관(제10조제2항 단서⁶⁾) 외에 정원 외로 공수처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44조⁷⁾)하고 있음.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공수처법」 제44조에 따라 공수처에 파견된 인원은 경찰(해경 포함) 3명, 지방자치단체 14명, 중앙행정기관 2명, 공공기관 3명 등 총 22명임.

〈공수처에 근무 중인 외부 파견인력 현황〉

(단위 : 명)

파견처 인원	경찰·해경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계
	3	14	2	3	22

자료: 공수처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운전직**: 차량 운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직위의 명칭은 직종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부여할 수 있다.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총 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 6)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7) 「공수처법」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2. 예산안 개요

가. 예산규모

- 2026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9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3억 7,800만원(17.3%) 증액되었음.

<2026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4결산	2025예산(A)	2026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B)	B-A	%
세입	—	—	—	—	—	—
세출	18,274	25,268	30,206	29,646	4,378	17.3

자료: 공수처

나.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액

- 공수처는 당초 예산당국에 302억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1.8%(5억 6,000만원)가 감액된 296억 4,6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첨단범죄 및 디지털 구축 사업에서 2,000만원, 기본경비(비총액)에서 2억 7,000만원 등 5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됨.

〈2026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명세〉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요구액(A)	조정액(B)	증감	
				금액(B-A)	비율(%)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9,265	8,995	△270	△2.9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2,171	2,171	—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650	2,380	△270	△10.2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3,354	13,354	—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344	1,324	△20	△1.5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07	1,407	—	—
공판활동지원		15	15	—	—
합 계		30,206	29,646	△560	△1.9

자료: 공수처

3. 세출예산액 명세

○ 내년도 공수처 예산안의 2025년도 예산 대비 증감비율 및 전체 예산 대비 경비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는 89억 9,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9%가 증액(3억 3,600만원)되었고 전체 예산 중 30.3%를 차지함.
- 기본경비는 45억 5,1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가 증액(4,500만원)되었고 전체 예산 중 15.4%를 차지함.
- 사업비는 4개의 사업에 총 16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3%가 증액(39억 9,700만원)되었고 전체 예산 중 54.3%를 차지함.

< 2026년도 세출예산안 경비별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구성비
			금액 (B-A)	비율 (B-A)/A	
인 건 비	8,659	8,995	336	3.9	30.3
기본경비	4,506	4,551	45	1.0	15.4
사 업 비	12,103	16,100	3,997	33.0	54.3
합 계	25,268	29,646	4,378	17.3	100

자료: 공수처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공수처 예산 연혁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및 부패 관련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독립 기관으로, 2021년 1월 21일 초대 공수처 처장이 임명되면서 정식 출범하였음.
- 2021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1년 1월에 기관이 출범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배정·집행됨.
- 2021년도 공수처 세입예산은 없고 총 수납액은 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300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임.

〈2021년도 공수처 소관 총세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년	—	3	3	—	100	—	—

- 2021년도 공수처의 세출은 232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액의 60.1%인 139억 4,600만원이 지출됨. 배정액의 17.0%인 39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3.0%인 53억 3,000만원은 불용됨.

〈2021년도 공수처 소관 총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년	—	23,220	23,220	13,946	—	60.1	3,944	5,330

- 2022년도 공수처 예산은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로만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7개 사업으로 19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5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공수처도 연가보상비 및 5개 경상경비 비목(일반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서 총 2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2022년도 제2회 추정 세출예산안은 197억 7,700만원임.

〈2022년도 공수처 세출예산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A)	제2회 추경(B)	본예산 대비 증감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7,828	7,816	△12	△0.2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828	7,816	△12	△0.2
○ 기본경비	4,316	4,271	△45	△1.0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18	1,718	－	－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98	2,553	△45	△1.7
○ 사 업 비	7,855	7,690	△165	△2.1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87	1,887	－	－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3,337	3,337	－	－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528	2,363	△165	△6.5
－ 공판활동지원	103	103	－	－
합 계	19,999	19,777	△222	△1.1

- 2023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99억 9,900만원 대비 11.6%(△23억 1,600만원) 감소, 추정 197억 7,700만원 대비 10.6%(△20억 9,400만원) 감소한 176억 8,300만원임.

〈2023년도 공수처 세출예산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본예산 대비 증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7,828	7,816	8,161	333	4.3
－ 공수처 운영인건비(총액)	7,828	7,816	8,161	333	4.3
○ 기본경비	4,316	4,271	4,404	88	2.0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18	1,718	1,707	△11	△0.6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98	2,553	2,697	99	3.8
○ 사 업 비	7,855	7,690	5,118	△2,737	△34.8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87	1,887	1,925	38	2.0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3,337	3,337	1,170	△2,167	△64.9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528	2,363	1,970	△558	△22.1
－ 공판활동지원	103	103	53	△50	△48.5
합 계	19,999	19,777	17,683	△2,316	△11.6

- 2024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3년도 예산 176억 8,300만원 대비 16.9%(29억 9,700만원) 증가한 206억 8,010만원임.

〈2024년도 공수처 세출예산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본예산 대비 증감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8,161	8,381	220	2.7
－ 공수처 운영인건비(총액)	8,161	8,381	220	2.7
○ 기본경비	4,404	4,369	△35	△0.8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07	1,818	111	6.5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697	2,551	△146	△5.4
○ 사 업 비	5,118	7,931	2,813	55.0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925	3,851	1,926	100.1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170	2,330	1,160	99.1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970	1,720	△250	△12.7
－ 공판활동지원	53	30	△23	△43.4
합 계	17,683	20,680	2,997	16.9

- 2025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4년도 예산 206억 8,010만원 대비 22.2%(45억 8,800만원) 증가한 252억 6,800만원임.

〈2025년도 공수처 세출예산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B)	본예산 대비 증감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8,381	8,659	278	3.3
－ 공수처 운영인건비(총액)	8,381	8,659	278	3.3
○ 기본경비	4,369	4,506	137	3.1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818	1,933	115	6.3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51	2,573	22	0.9
○ 사 업 비	7,931	12,103	4,172	52.6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3,851	9,788	5,937	154.2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2,330	855	△1,475	△63.3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20	1,430	△290	△16.9
－ 공판활동지원	30	30	－	－
합 계	20,680	25,268	4,588	22.2

- 2026년도 공수처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252억 6,800만원 대비 17.3%(43억 7,800만원) 증가한 296억 4,600만원임.

〈2026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세입	－	－	－	－	－
세출	18,274	20,680	25,268	29,646	4,378 (17.3%)

자료: 공수처

나.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공수처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은 없음.

다만,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1031-300)” 사업에서 ‘전자영장시스템 구축’ 1건이 신규로 36억 5,500만원 편성되었고, 2025년 종료되는 내역사업은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1031-300)” 사업에서 ‘개인정보보안솔루션’ 1건이 있음.

〈2026년도 신규 및 2025년 종료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신규 (1건)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	3,655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	—	3,655
	합계	—	3,655
종료 (1건)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72	—
	— 개인정보보안솔루션	72	—
	합계	72	—

-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총 7개 세부사업 중 증액사업은 4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7001-100)” 사업은 공무원 처우 개선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89억 9,500만원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사업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실수요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1억 7,100만원임.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사업은 전자영장시스템 신규 추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2차년도 사업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6.4% 증가한 133억 5,400만원임.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031-301)” 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라이선스 갱신 및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54.9% 증가한 13억 2,400만원임.

○ 반면, 감액사업은 3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5% 감소한 23억 8,000만원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사업은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및 수사활동 국내 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14억 700만원임.

“공판활동지원(1033-301)” 사업은 집행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전년 대비 50.0%가 감소한 1,500만원임.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명세〉

(단위: 백만원, %)

구분 사항별	2025년도 예산(B)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구성비
			금액 (B-A)	비율 (B-A)/A	
○ 인 건 비	8,659	8,995	336	3.9	30.3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659	8,995	336	3.9	30.3
○ 기본경비	4,506	4,551	45	1.0	15.4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933	2,171	238	12.3	7.3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73	2,380	△193	△7.5	8.0
○ 사 업 비	12,103	16,100	3,997	33.0	54.3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9,788	13,354	3,566	36.4	45.0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855	1,324	469	54.9	4.5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1,407	△23	△1.6	4.7
- 공판활동지원	30	15	△15	△50.0	0.1
합 계	25,268	29,646	4,378	17.3	100.0

자료: 공수처

다. 예산구조 분석

- 공수처의 2026년도 예산안은 크게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1000)과 행정지원 프로그램(7000)으로 구분됨.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등 공수처의 직무 수행을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으로 이루어짐.
- 공수처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적 성격을 지닌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약 90억원, 기본경비가 약 45억원으로 각각 전체 공수처 예산안의 30.3%, 15.4%를 차지함에 따라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총 세출예산안의 45.7%에 달함. 이는 2025년도 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경상경비 비중인 52.1%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공수처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경비별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계
2025년도 본예산	8,659 (34.3%)	4,506 (17.8%)	12,103 (47.9%)	25,268 (100%)
2026년도 예산안	8,995 (30.3%)	4,551 (15.4%)	16,100 (54.3%)	29,646 (100%)

자료: 공수처

〈공수처의 2026년도 예산안 사업구조 및 예산액〉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공수처 활동 (16,100,	공수처 업무 정보화 (14,678)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13,354)

54.3%)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1,32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07)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07)
	공판활동 (15)	공판활동지원 (15)
행정지원 (13,546, 45.7%)	소속기관 인건비 (8,995)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995)
	기본경비 (4,55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2,17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2,380)

자료: 공수처

- 사업비에 해당하는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54.3%임. 사업비 중에서는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 사업 및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1031-301)” 사업의 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총 146억 7,800만원으로, 공수처 예산안 사업비의 91.2%(전체 세출예산안의 49.5%)임.

〈공수처 2026년도 예산안의 사업비 세부내역 및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금액	사업비 중 비율	전체 세출예산안 중 비율
○ 사업비 전체		16,100	100%	54.3%
정보화 예산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3,354	82.9	45.0%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324	8.2	4.5%
일반예산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07	8.8	4.7%
	공판활동지원	15	0.1	0.1%

* 주: 공수처 전체 세출예산안은 296억 4,600만원임
자료: 공수처

Ⅱ.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

1. 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

가. 공수처 대표 성과지표

「국가재정법」 제85조의6⁸⁾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 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4년부터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를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작성하고 있음.

8)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 22	' 23	' 24	' 25	'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 %)	목표	31	-	-	-	-		(교육 이수 1회 X 인원수)+ (교육 이수 2회 X 인원수)	교육 공문 및 보고자료를 통한 실적 집계
	실적	23	-	-	-	-			
	달성도 (%)	74.2	-	-	-	-			
②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87	-	-	-		(매우 만족 수x100)+(만족 수x75)+ (보통 수x50)+ (만족 수x25)+ (매우 불만족 수x0)	디지털 포렌식 이용한 수사처 검사·수사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37.8	91.9	-	-	-			
	달성도	135.1	105.6	-	-	-			
③ 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신규	75	-	-	-		본년 사건(공제 결정+진정 처리) 건수/본년 사건 (공제+진정) 접수 건수	'23년도 사건 (공제, 진정) 의 접수 및 처리 건수를 각각 집계한 KICS 자료
	실적	신규	86.3	-	-	-			
	달성도 (%)	신규	115.1	-	-	-			
②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7	88	88	'25년 KICS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시스템 변동성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이용 만족도 총점 :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리커트 척도 환산)/항목 개수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공수처 KICS 및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8.5					
	달성도	신규	신규	101.7					

자료 : 공수처

나. 성과지표와 기관 임무와의 연계성 및 객관적 측정방식 제고 필요

기재부의 2026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⁹⁾상 성과목표체계는 “프로그램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프로그램 목표 설정 시에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규정과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법 제85조의6 제2항)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성과지표 설정 방법>

4.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원칙으로 결과·정량 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 목적

- ☐ (개념)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measure)할 수 있는 잣대로써 성과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
- ☐ (목적)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관리(법 제85조의6 제3항)
 -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
 -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예산사업 추진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

(2) 프로그램 성과지표 설정 기본방향

- ☐ (지표설정) 원칙적으로 1프로그램 1성과지표로 설정
 - * 프로그램 목표수가 1~2개인 경우로서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부처는 프로그램 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조정 가능
(단, 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핵심성과, 중요도,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

9) p.40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참조

- (정보화) 프로그램 내 ①정보화 사업 예산비중*이 2/3 이상이거나, ②핵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되어 프로그램 성과와 밀접할 경우, 관련 성과지표 반영

- ☐ 다부처 연계·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협업과제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

(3)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시 고려사항

- ☐ (측정방법)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
 -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
- ☐ (목표치) 목표치는 프로그램 내·외부 환경변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 근거를 명확히 작성

공수처의 경우 대표 성과지표를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로 설정하여, 공수처 KICS 및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의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사활동 프로그램 사업 중 정보화 예산 비중이 2/3를 초과하여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를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이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기관의 설치목적과 거리가 있고, KICS 및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사용한 직원 만족도는 기관의 역할과 관련성이 낮으며,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사건처리율 등 수사실적에 대한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방안이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예산 전략목표 설정의 적절성(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의 연계성), 프로그램 목표 설정의 적절성(수사 정보화는 수사를 보조하는 활동일뿐 정보화 자체가 공수처의 목표는 아님),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사업 평가를 공수처 직원 만족도 조사로 설정함으로써 객관적 측정방식 결여)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성과목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성과지표(사건처리율 등)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 달성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수처 인력운용 지속 개선 필요

가. 공수처 인력운용현황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검사(제4조 및 제8조제2항)¹⁰⁾, 40명 이내의 수사처수사관(제10조제2항)¹¹⁾ 및 20명 이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제11조)¹²⁾ 등 총 8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는데, 2025년 10월 15일 기준 현원은 수사처검사 21명, 수사처수사관 38명, 행정직원 19명 등 총 78명임¹³⁾.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및 행정직원 채용현황 (2025.10.기준)>

구 분	정원	현원	임명일
○ 수사처검사 합계	25	21	
－ 처장	25	1	2024.05.21.(1명)
－ 차장		1	2024.07.30.(1명)
－ 부장검사		4	2021.10.28.(4명)
－ 평검사		15	2023.02.24.(3명) 2023.06.21.(1명) 2023.09.27.(2명) 2023.12.04.(1명) 2024.07.22.(1명) 2025.05.26.(6명) 2025.07.02.(1명)

- 10) 「공수처법」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 11)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12)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13) 2025. 10.까지 현원은 수사처검사 21명, 수사처수사관 38명, 행정직원 19명 등 총 78명이나, 현재 (2025.11.) 수사처검사 4명, 수사처수사관 2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임.
- *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 수사처수사관 합계	40	38	
－ 서기관	2	2	2021.05.14.(2명)
－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4	－	
－ 검찰사무관	13	10	2021.05.14.(7명) 2021.07.25.(1명) 2021.10.29.(10명) 2021.11.02.(1명) 2022.09.01.(4명) 2022.12.26.(4명) 2023.01.02.(1명) 2023.05.16.(1명) 2023.09.01.(1명) 2024.02.20.(1명) 2024.07.22.(3명) 2024.12.23.(2명)
－ 검찰주사	18	20	
－ 검찰주사보	3	6	
○ 행정직원 합계	20	19	
－ 고위공무원단	2	1	2024.01.29.(1명)(파견)
－ 부이사관·서기관 등	5	5	2022.01.21.(1명)(파견) 2024.07.15.(1명) 2024.08.01.(1명)(파견) 2024.09.23.(1명) 2025.08.13.(1명)(파견)
－ 행정사무관·별정직 5급 등	4	2	2021.01.25.(1명) 2025.06.02.(1명)
－ 행정주사 등	4	7	2021.01.21.(1명) 2021.01.25.(2명) 2021.02.01.(1명) 2021.02.22.(1명) 2021.06.15.(1명) 2023.03.31.(1명)
－ 행정주사보 등	3	3	2021.02.03.(1명) 2025.05.01.(1명) 2025.10.15.(1명)
－ 기타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2	1	2021.01.21.(1명)

자료: 공수처

또한, 공수처에서는 사무보조직, 운전직, 방호직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¹⁴⁾도 두고 있음.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보수, 복무 관련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운전직: 차량 운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내용은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데¹⁵⁾, 2025년 10월 기준 공수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38명 중 37명을 채용하고 있음.

〈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 (2025.10.기준)〉

구 분	정원	현원	임명일
○ 공무직근로자 합계	38	37	
행정실무원	26	26	2021.03.30.~2021.11.01.(16명) 2022.02.11.~2022.07.15.(14명) 2023.04.18.~2023.09.20.(4명) 2024.03.20.~2024.12.13.(15명) 2025.06.20.(3명), 2025.7.18.(1명) ※퇴직 25명, 휴직 2명 제외
운전실무원	3	3	2021.03.30.(2명), 2021.04.19.(1명), 2024.04.01.(1명) ※퇴직 1명
방호실무원	9	8	2021.03.30.(7명), 2021.05.01.(1명) 2022.02.11.~2022.11.28.(7명) 2024.05.20.(1명), 2024.08.19.(1명), 2025.07.18.(1명) ※퇴직 10명

자료: 공수처

※ 공무직 정원 : 2025년 38명, 2026년 38명

나. 파견인력 과도로 인한 독립성·전문성 저해 우려

위에서 살펴보았듯, 2025년 10월 기준 공수처 정원은 85명, 현원은 78명 이고, 그 외 사무보조 등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37명이 근무 중임. 그런데 「공수처법」에서는 정원 내에 포함되는 검찰청 검찰수사관(제10조제2항 단서¹⁶⁾) 외에 정원 외로 공수처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총 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16)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44조17))하고 있음.

「공수처법」 제44조에 따라 공수처에 파견된 인원은 2025년 10월 기준 행정인력 19명(국가기관 2명, 지자체 14명, 공공기관 3명), 수사인력 3명(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2명) 등 22명임.

〈공수처 파견인력 현황(2025.10.기준)〉

(단위: 명)

구분	파견기관	인원 수
행정인력 (19명)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14
	공공기관	3
수사인력 (3명)	경찰청	1
	해양경찰청	2

자료: 공수처

공수처 인력 규모는 정원이 2,292명인 검사¹⁸⁾나 130,972명인 경찰¹⁹⁾과 비교할 때 적은 인력이나,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수는 약 7,100명, 이 중 기소대상자는 약 5,600명으로 각각 추산되고, 공수처 출범이후 2025년 8월말 공수처 접수사건도 10,988건(2025.8.31. 기준)에 달하여 공수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필요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음.

17) 「공수처법」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18) 현원(2025. 9. 기준)은 2,071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검찰청 정원은 10,657명임.

*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19) 현원(2024. 12.기준)은 131,807명이고,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5,485명)을 포함한 정원은 137,667명임.

〈공수처, 검찰, 경찰간 인력규모 비교〉

(단위: 명)

구분	공수처	검찰	경찰
정원	85	10,657	137,676
현원	78	10,616	144,087

* 주: 공수처 2025. 10. 기준, 검찰은 2025. 9. 기준, 경찰은 2024.12. 기준임.

자료: 공수처, 검찰, 경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공수처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2025.8.기준)〉

(2025. 8. 31. 기준, 단위: 건)

구분	건수	세부현황
접수	10,988	• 이첩요청: 14 • 인지통보: 687 • 이첩: 286 • 고소·고발·진정 등: 9,824
처리	10,376	• 입건 등²⁰⁾: 1,668 • 불입건 등²¹⁾: 4,712 • 이첩 3,996

자료: 공수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파견인력 비중이 전체 공수처 정원(85명) 대비 약 25%에 육박하고, 통상 기관의 기획·관리는 그 연속성을 위해 정원 내 직원이 담당하고 집행·실무는 파견자 등 정원 외 인력 담당이 일반적임. 그러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20명 중 처장 비서관 1명 및 간부 5명(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을 제외한 14명만 조직유지기능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 인사, 회계, 조직 등 기관유지를 위한 주요기능을 다수의 파견인력이 담당하고 있음.

20)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21. 1. 21. ~ '22. 3. 13.)의 ① 입건 사건+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22. 3. 14. ~ '25. 8. 31.)의 ② 공제 사건(공소제기, 공소제기 요구, 불기소 등) 및 ③ 내사 입건, 기타 사건, ④ 조사 입건 등 사건

21)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21. 1. 21. ~ '22. 3. 13.)의 ① 불입건 사건+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22. 3. 14. ~ '25. 8. 31.)의 ② 내사 수사불개시 사건. ③ 진정 공람종결 사건

파견인력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기관유지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연구사)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6)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소속직원(행정5)
	과 서무	소속직원(공무직)
회계	회계·계약(지출관)	파견(행정7)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조직진단	소속직원(행정6)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따라서 공수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파견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만약 현재 정원이 공수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파견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정원 확대방안 모색이 공수처의 독립성·전문성 제고에 더 적합할 것임.

이에 따라 2022년도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는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 인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²²⁾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모두 폐기되었음.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의안번호 제2200876호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등이 다수 발의²³⁾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를 종합하여보면,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 및 파견공무원의 적절한 부서배치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규모를 검토하며,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2) 의안번호 제2110857호 이수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1515호 송기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8489호 권인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336호 권칠승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664호 소병철의원안

23) 의안번호 제2201405호 이성윤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942호 전현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10337호 윤준병의원안, 의안번호 제2210404호 최민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12421호 한정애의원안

◆ 개별사업별 검토 ◆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가. 예산안 개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직접수사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300만원(1.6%) 감액된 14억 700만원임.

〈2026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131	1,430	1,407	△23	△1.6

자료: 공수처

나. 내부고발자 제도 실질화 노력 필요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²⁴⁾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제6조에서 신변안전조치, 제8조에서 포상금, 제9조에서 구조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공수처 고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포상금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²⁵⁾하고 있음.

24) 내부고발자의 정의는 「공수처법」이나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수처 고시인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함.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25)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장 신변안전조치 :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신청), 제22조(의견청취)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구조금의 신청),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2026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포상금(310-03)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만원, 기타보전금(310-04)에 내부고발자 치료비, 이사비 등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2026년 공수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포상금 (310-03목)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0,000원	5,000
	기타보전금 (310-04목)	내부고발자 치료비, 이사비 등	3건*1,000,000원	3,000

자료: 공수처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내부고발자 지원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제도 활용이 없었음.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내부고발 건수는 2건이었고, 이 중 구조금 지원신청은 1건이며 지급내역은 0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공수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6,000	—	4,000	—	2,000	—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	6,300	—	—	—	—	—
내부고발자 포 상금, 치료비, 이사비 등	55,000	—	22,500	—	8,000	—

자료: 공수처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 또는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의견임.

그러나 공수처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은 일회성으로 실시되어 2024년에는 내부고발 안내서가 배포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별도 홍보를 한 바도 없어 내부고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공수처와 유사하게 범죄신고자 보호·지원조치를 두고 있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홍보·교육하는 방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1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4,923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 영상 제작	12,000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8,000
	합계	34,9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공 판 활동 지원(1033-301)

가. 예산안 개요

공판활동지원 사업(1033-301)은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50%) 감액된 4,900만원임.

〈2026년도 공판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공판활동지원	15	30	15	△15	△50

자료: 공수처

나. 검사 스피치 교육비용의 필요성 검토 필요

공판역량강화 사업은 공판활동지원(1033-301) 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계상된 후 매년 편성되고 있음.

〈2024년~2026년도 공판역량강화 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2026년
공판활동지원 -공판역량강화	22 (8명×2회×140만원)	14 (5명×2회×140만원)	7 (5명×1회×140만원)

자료: 공수처

2024년 해당 사업이 신설된 이유는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대응하여 공판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공수처 검사는 임용 전 검사 경력 보유 검사가 소수(7명/총 20명)라는 점을 고려, 스피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공판 역량강화 지원[스피치] 교육 사업개요 등

☐ 사업개요

- (교육인원) 5명
- (교육내용) 말하기 기술 + 발성 등 교정 + PT 훈련 등
 - ①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기술
 - ② 발성 · 발음 트레이닝, 자세 · 제스처 · 시선 등 교정
 - ③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PT 작성 훈련프로그램 운영
 - ④ 실습상황 녹화 및 모니터링으로 집중적인 밀착 코칭

☐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백만원(전년 대비 7백만원 감액)

- ① 검사(7백만원) : 1,400천원 × 5명

자료: 공수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발생²⁶⁾하는 등

2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참고

공판절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역량 강화라는 동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검사 스피치 교육의 경우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이 계획한 검사 대상 스피치 교육은 공판역량 강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공수처의 사업개요에 따르면, 2026년 실시 예정인 검사 스피치 교육은 스피치 과정으로서 공판 특화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임.

프레젠테이션 관련 교육을 통해 공판정에서의 의사전달 능력이 향상된다면 공소유지 등 공판대응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대응 역량의 확보는 공판절차와 관련한 실무상 지식 습득이 보다 중요할 것인바, 해당 교육은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특히, 공수처가 계획하고 있는 스피치 교육과정은 4일간 이루어지는 단기 과정임에도 수강료가 인당 14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 교육의 효과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수처는 2023년부터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사업 중 일반용역비(210-14)에 민간위탁교육을 위한 예산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판역량 강화와 관련된 위탁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2021년~2025년 공수처 민간위탁교육 실시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번	실시일자	교육명	위탁기관	예산	집행액
1	2022.12.5.~6.	공수처 행복한일터 만들기 프로그램 (공무직 대상 위탁교육)	한국생산성본부	17,000	17,000
2	2023.5.18.~19.	수사역량 강화 및 조직핵심 가치 실현 관련 위탁교육	한국능률협회	16,530	16,530
3	2023.5.24.~26.	공수처 우수성과자 국내 단기 위탁교육	한국표준협회	21,780	21,780
4	2023.11.7.~8.	2023년 공무직 직무역량 교육	한국표준협회	14,274	14,274
5	2023.12.14.	공수처 수사1부 직무역량 교육	한국생산성본부	6,100	6,100
6	2023.12.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워크숍	한국생산성본부	6,100	6,100
7	2024.10.8.	24년 공수처 직원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명사특강)(1차)	한국생산성본부	11,320	11,320
8	2024.11.21.	24년 공수처 직원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명사특강)(2차)			
9	2024.10.22.	24년 공수처 공무직 직무 역량강화 교육 관련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한국능률협회	15,000	15,000
10	2024.11.26.	2024년 전직원 소통 및 역량강화교육	한국능률협회	17,400	17,400
11	2024.12.11.~13.	2024년 공수처 우수성과자 역량강화교육	한국표준협회	17,500	17,500

12	2025.5.27.	2025년 공수처 공무직 직무역량강화교육 관련 민간위탁교육	한국능률협회	12,700	12,700
13	2025.6.25.~27.	2025년 공수처 우수성과자 역량강화교육	한국표준협회	20,190	20,190

자료: 공수처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충액)’ 사업의 민간위탁교육 예산의 2023년 및 2024년 집행액을 보면 총 8,600만원 중 약 6,500만원 미만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공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공판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공판역량강화 예산을 별도 편성할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2023·2024년 민간위탁교육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민간위탁교육	86,000	64,784	86,000	61,220

자료: 공수처

셋째, 공수처는 총 5명의 검사에 대하여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교육 실시로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공수처의 2025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까지 총 1,058건을 처리하였으나 그 중 공소제기 건은 1건이고, 공소제기 요구 사건이 3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20%에 달하는 5명에 대하여 공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임.

〈2025년 공수처 사건처리현황〉

(2025. 8. 31. 기준, 단위: 건)

구분	직접 처리								
2025년	공제			내사			진정	조사	소계
	공소 제기	공소제기 요구	불기소 등	수사 불개시	입건	기타	공람 종결 등	입건	
	1	3	367	101	0	0	584	2	

자료: 공수처

참고로, 검찰청은 공판활동지원(1337-300) 사업 중 일반수용비(210-01)에 공판역량강화 지원 명목으로 8,900만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바, 검찰 인력규모와 비교할때 공수처의 공판역량 강화 예산 700만원은 과도한 측면²⁷⁾이 있음.

〈2026년 검찰 공판역량강화 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내역	산출근거	금액
[1337-300] 공판활동지원		
[210-01] 일반수용비		
2. 공판역량강화 지원	89,000,000원=	89,000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출범 초기 검사경력이 부족한 공수처 검사들의 공소유지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후 2026년부터는 공판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교육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7) 공수처 검사정원(25명)은 검찰청 검사(2292명) 대비 92분의1 수준이나, 공판역량 강화 예산(700만원)은 검찰의 공판역량강화 지원 예산(8,900만원) 대비 12분의1 수준임.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스피치교육은 공판 특화 교육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함양 교육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검사경력 보완 교육으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수처의 공판역량 강화사업은 그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

1. 성과목표체계 수립방법

◇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프로그램 목표 체계 제시

- 프로그램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

(1) 임무 설정

- 임무는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규정과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법 제85조의6 제2항)

(2) 비전 설정

- 비전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알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하고 단순한 전략의 나열 또는 상상에 의한 비전 수립은 지양하여 설정

(3)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하며,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하게 작성
-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정
- 전략목표 수립 시 국가 장기계획 또는 관련 법령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
- 전략목표의 수는 기관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반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과다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4개 내외 권고)

(4) 프로그램 목표 설정

- 프로그램 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임
-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의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를 내용으로 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2.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 선정

◇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연계성, 포괄성, 동질성, 책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

(1)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원칙

□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연계성, 포괄성, 동질성, 책임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 (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예산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설정

□ (예산 소관과 사업 추진주체가 이원화된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프로그램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3. 프로그램 분석 및 목표 설정

◇ 프로그램 투입·활동·산출·결과 전 과정 및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책, 외부요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목표·지표 설정

◇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 내 사업들을 대표하면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로 설정

(1) 프로그램 분석

□ (의의) 성과목표관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법·정책, 외부요인 등) 및 투입·활동·산출·결과 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목표 및 지표 설정 필요

□ (방법) 프로그램 분석은 논리모형에 의거하여 수행

(2) 프로그램 목표 설정

□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

□ 다음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 목표 설정

① (연계성) 프로그램 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목표와 상호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② (대표성) 단위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

③ (결과지향성)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effect) 및 결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성과물이 단기·중기·장기에 따라 구분되거나, 프로그램의 결과(outcome)가 단기에 도출되기 어려운 경우*,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가능

- ④ (구체성) 목표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measure)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3) 프로그램 정책환경·외부요인 분석

-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시킬 전략 또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

4.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원칙으로 결과·정량 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 목적

- ☐ (개념)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measure)할 수 있는 잣대로써 성과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
- ☐ (목적)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관리(법 제85조의6 제3항)

(2) 프로그램 성과지표 설정 기본방향

- ☐ (지표설정) 원칙적으로 1프로그램 1성과지표로 설정
- ☐ 다부처 연계·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협업과제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

(3)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시 고려사항

- ☐ (측정방법)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 (목표치) 목표치는 프로그램 내·외부 환경변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